

1. 개정이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기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노무제공자”의 정의를 신설하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법률 제18928호, '22. 6. 10. 공포, '23. 7. 1. 시행)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 지급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률 제명 변경 사항 반영(안 제22조)

타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하고, ‘한국산업안전공단’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함

나.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안 제64조의3)

노무제공자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44조제1호 중 “근로시간 및”을 “및”으로 한다.

제3장제14절에 제6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91조의15제1
호에 따른 노무제공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의 보험급여의 신청
· 청구 및 결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
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
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
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
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
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
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및 제64조의2까지를 준용
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제85조를 준용한다.

③ 노무제공자가 법 제91조의17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7조 및 제78조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공단이나 판정위원회는 업무상 질병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질병 과 유해·위험요인 사이의 인과 관계 등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자문 할 수 있다.	제22조(업무상 질병에 관한 자문) ----- ----- ----- ----- ----- -----.
1.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u>따른 한국산업안전공단</u>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u>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u> <u>단</u>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영 제50조제1항에서 “고용노동부 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44조(부분휴업급여의 청구) -- ----- ----- -----.
1. 취업 사업장의 명칭, 취업기 간, 종사 업무의 내용, <u>근로시</u> <u>간 및 임금</u> 등을 적은 서류	1. ----- ----- 및 ---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제64조의3(노무제공자에 대한 보</u> <u>험급여의 지급 등) ① 법 제91</u> <u>조의15제1호에 따른 노무제공</u> <u>자(이하 “노무제공자”라 한다)</u> <u>의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u>

정·통지 등에 관하여는 영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37조, 제38조, 제44조, 제45조, 제48조부터 제53조까지, 제55조부터 제66조까지, 제66조의2, 제67조부터 제71조까지, 제71조의2,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부터 제77조까지, 제77조의2, 제78조, 제79조, 제79조의2, 제80조, 제81조, 제81조의2, 제82조, 제83조, 제83조의2, 제83조의3,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제101조부터 제105조까지, 제113조부터 제120조까지 및 이 규칙 제2조, 제5조, 제10조부터 제61조까지, 제61조의2, 제62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및 제64조의2까지를 준용한다.

② 노무제공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제85조를 준용한다.

③ 노무제공자가 법 제91조의17 제3항에 따라 평균보수 산정기간 동안 근로자로서 지급받은

제7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급여의 산정 기준 등)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에 따른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법 제125조제8항에 따른 평균임금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평균임금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

②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의 본인 일부 부담금의 대부 및 충당에 관하여는 영 제84조·제85조를 준용한다.

제78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재요양에 따른 휴업급여 등의 지급 기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재요양 당시 업무상의 재해를 입을 당시의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56조 및 법 제69조를 적용할 때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는 경우로 보아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을 지급한다.

임금을 보수와 합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임금을 증명하는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